



2. 연구개발비 사용

5 연구과제추진비

정의

-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
-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등
- 회의비(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)
-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(인문사회 해당없음)

계상기준

-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

사용방법

- 사용원칙

사용 용도	카드사용	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
국내여비	• 실비 정산 시	• 기관 기준에 의거 정액경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
연구환경유지비	• 사무용품비	•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등
회의비	• 회의비	
식대	• 야근 및 특근 식대	

• 사용용도별 집행절차

사용 용도	집행절차 및 관리
국내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여비는 국·공립 대학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·집행하고,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·집행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·집행함 * 다만, 연구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규정은 불인정
연구환경유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기관의 규정 및 행정절차에 따름(인문사회 해당없음)
회의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의비 사용 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* 작성 유지 * 회의목적, 회의일시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 * 주말 및 휴일집행(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) * 심야(23사~06시) 집행 원칙적으로 불가(집행의 불가피성과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)
식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당해연구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 및 특근식대(인문사회 해당 없음) * 야근 및 특근 서류 구비

● **부당집행 사례**

-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(타 과제 심사회의, 학회 이사회, 위원회 참석 등)이나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
-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불인정
-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(회의목적, 회의일시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)
- 유흥주점,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
 -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행위 하는 곳

● **증빙서류 구비**

● **국내여비**

-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
 - 내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 구비
-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
 - 출장신청서, 출장관련 서류, 연구비카드 사용 전표(교통, 숙박, 식비 등)

● **회의비**

- 회의비는 내부품의서, 카드매출전표 및 회의록* 등 관련자료 구비
 - * 회의목적, 회의일시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
 - 회의비(주말 및 공휴일 포함)는 사전원인행위(문서) 또는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구비

● **식대**(인문사회 해당 없음)

- 야근 및 특근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
 - * 지출결의서 등에 식대 사용자 구체적 명단 표시 포함

특기사항

<연구환경유지비>

인정 항목	불인정 항목
① 연구환경유지에 필요한 비품·기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냉난방기기(선풍기, 냉장고, 에어컨, 온풍기, 난로 등), 공기정화기, 차광기, 가습기, 스탠드, 청소도구 및 보관함, 쓰레기통, 정수기,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*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·유지 비용은 불인정 • 책상, 의자, 캐비닛, 파티션 등 	①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·기기의 구입·유지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V, 비디오, 라디오, 음향시설, 운동기구, 관상용 화분, 카페트, 커피머신 등 ② 비품, 기기의 구입·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물보수, 페인트칠,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•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, 커피, 차, 음료,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•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·이용되지 않는 경우

※ 인문사회분야사업은 연구환경유지비용 불인정